

대법원 2020. 11. 26 선고 2020다256187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]

전 문

원 고

주식회사 AA

피 고

대한민국

변 론 종 결

판 결 선 고

2020. 11. 26

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. 7. 2. 선고 2020나2006441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
은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.
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

판결한다.